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0. 17.(화) 석간 2023. 10. 17.(화) 06:00	배포	2023. 10. 16.(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이 보다 안전해집니다

- 10월 17일 복지부-국토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노인일자리로 역량 있는 안전점검원 집중 양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7일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가 기술·인력·비용 지원 등으로 더욱 강화**되어 **위험시설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에 미포함된 사회복지시설 등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은 노후화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점검대상 시설수가 과다**하여 **안전관리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양 부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천 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18만 건 이상의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 양성인원 (누적)	2백 명	4백(6백)	6백(1.2천)	8백(2천)	1천(3천)
* 점검 건수 (누적)	12천 건	24천(36천)	36천(72천)	48천(120천)	60천(180천)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강화, **IT 기반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점검 결과, 안전우려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 안전검점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의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지자체가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 지원

양 부처는 "협업을 통해 양 기관의 **국정과제*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를 통해 **`27년까지 2700억 원 이상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천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 (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충(국정과제 45)
(국토부) 소규모 시설물 관리강화(국정과제 69)

조규홍 장관과 원희룡 장관은 "이번 협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경로당의 안전이 확보**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약자 복지를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044-201-4598)
		담당자	서기관/사무관	박광훈/강선명	(044-202-3478/ 3477)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기술정책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문봉섭	(044-201-4598)
		담당자	사무관	문선일	(044-201-48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1. 추진배경

□ 국토부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 등에서 요청 시 **무상점검 지원 중**이나, 최근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에 한계*

* **지원 가능한 점검 수는 연간 4천 건** 수준이나 **최근 신청 수는 8천 건 이상**으로 확대

○ **현행 무상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의 한계**로 안전상 결함 확인 시, 지자체의 **정밀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재정상 문제로 지연**

□ 복지부의 경로당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05년)된 후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 기능보강 등에 편차 발생**

*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국고 지원/ 기능보강비, 운영비, 부식비는 지자체 부담 중**

☞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 (복지부)**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질의 노인일자리로 창출**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은 (국토부)**신속한 기능보강까지 지원 ⇒ 부처 간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2. 주요내용

□ (**제도정비**) **복지부**는 경로당 **점검기준 정비**와 스마트 **웹 활용 의무화**, **국토부**는 IT기반 **스마트 웹***을 **개발·보급 및 교육, 성과검증 지원**

* 스마트폰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 접속하여 18개 점검항목의 영상, 문자정보 등을 입력 시 보고서가 자동 생성될 수 있는 점검용 반응형 웹

□ (**노인일자리 연계**) **복지부**는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참여자**를 **안전 점검인력**으로 **활용 지원**, **국토부**는 **안전점검원의 교육**을 전담하여 그 **성과에 따라 '24년도에 전국 확산 추진**

☞ **'24년 400명 투입 2.4만 건 점검** 실시, **'27년까지 일자리 참여자 1천 명*** **활용하여 18만 건**(4년간 누적) **이상 점검** 실시 * '23년 약 210명 참여 중

□ **(안전관리 지원강화)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성 우려 시설***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 후, 안전 **위험시설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예산**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

* 점검자가 스마트 웹을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를 입력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과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미흡,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준공 10년 이상 시설의 에너지 성능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 공사비 70% 지원('23년 1910억 원)

3. 기대효과

□ 소규모 취약시설 위험시설 조기 확인과 **지자체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안전점검비 2.7천억 원 투자효과와 일자리 3천 개 창출**('27년까지 누적)

붙임2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Q&A**

Q.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

A.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 등을 말함

Q.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

A. 소규모 취약시설 수는 전체 8.2만 개이며 이중 사회복지시설이 8.1만 개로 99%로 차지(경로당은 4.6만 개 56%, 어린이집 2.1만 개 26% 등)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기타 시설물이 1%를 차지하고 있음

Q.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주 내용은?

A. 복지부와 국토부 양 기관에서 각자 운영하던 점검제도와 보조금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점검인력을 노인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로당 등 시설의 보수·보강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우선 「시설물 안전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점검방법 및 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점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복지부)을 통해 점검인력을 채용·육성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국토부)과 연계하여 보수보강비 지원방안을 마련함

Q. 지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A. 지자체는 경로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7년 기준으로 연간 900억 원의 안전점검 비용 투자 효과와 매년 시니어 일자리 1천 개 이상 창출 가능함

※ (**누적효과** '23-'27년) 안전점검비 2.7천억 원 투자 효과와 일자리 3천 개 창출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연도별 채용인원 (누적)	2백명	4백(6백)	6백(1.2천)	8백(2천)	1천(3천)
시니어 시설점검 (건수)	12,000	24,000	36,000	48,000	60,000
소요 예산* (누적)	16억원	32(48)	48(96)	64(170)	80(250)

* 시니어 채용에 소요되는 일자리 사업비로 국비 50%, 지방비 50% 차지

Q. 시니어 안전점검원의 자격요건은?

A. 60세 이상 채용 지역 거주자일 경우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분야(건축·토목) 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

※ (**60대 이상 기술인 현황**) 토목건축 분야 12만 명, 3만 명은 무직상태 ('22.12, 기술인협회)

또한, 국가 혹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개인 여건상 안전점검 업무에 차질이 있는 자는 제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

Q. 시니어 안전점검원의 안전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A.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점검 수행을 위해 손쉬운 점검용 스마트 웹을 제공하고, 점검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

특히, 시니어 안전점검결과는 실시간으로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성과검증을 하여 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임

Q. 지자체에서 사업참여 방법은?

A. '24년은 금년도 하반기 중 참여 기초 지자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25년부터는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수요를 조사하여 지자체별 시니어 채용인력수를 배정할 계획임

붙임3 **소규모 취약시설 관련 통계자료 (국토부)**

1 소규모 취약시설 현황

합계	사회복지시설 ('22.12 기준)				기 타	
	계	경로당	어린이집	기타	전통시장	토목시설
81,781	80,613	45,915	21,131	13,567	659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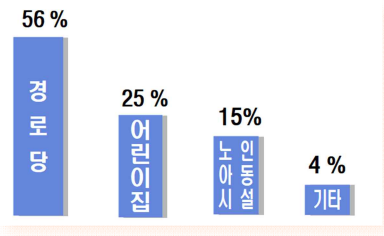

< 시설물 종류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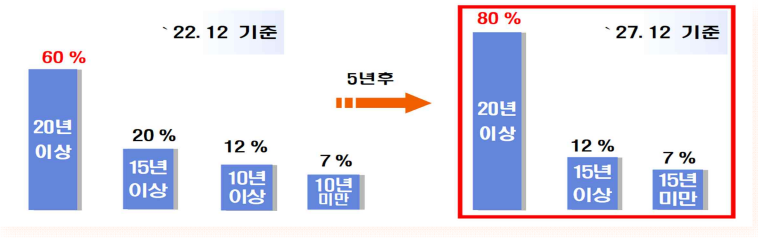

< 노후시설 현황 및 전망 >

2 무상안점점검 신청 및 지원실적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무상점검 신청건수	7,882	4,024	3,542	8,275	8,609
무상점검 실적건수	4,700	4,709	4,705	4,922	3,525
미흡/불량시설 수(비율)	30 (0.6%)	55 (1.2%)	44 (0.9%)	50(1.0%)	8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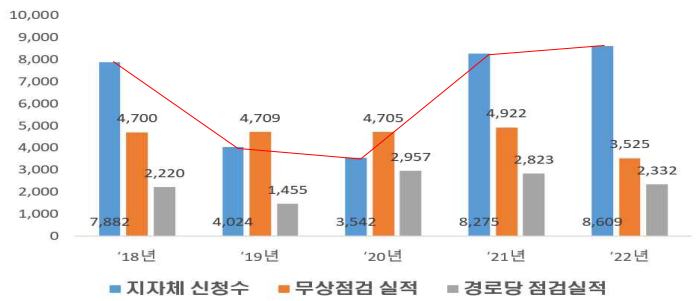

< 무상점검 신청 및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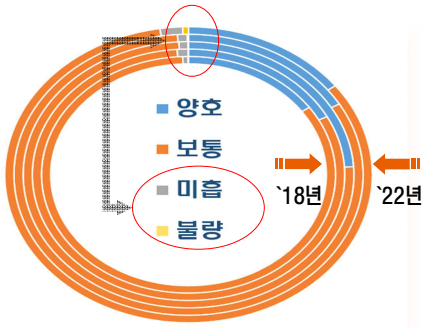

< 점검결과 현황>

붙임4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개요 (복지부)**

□ 사업개요

○ (**사업명**)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 (**사업유형**) 사회서비스형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노인일자리

○ (**사업내용**) 경로당 중심 ①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②점검내용은 스마트 앱[국토안전관리원 개발] 활용한 관리, ③사후관리 지원(미흡시설) 등

-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직무
- (**선도모델**)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양성·교육, 모니터링 등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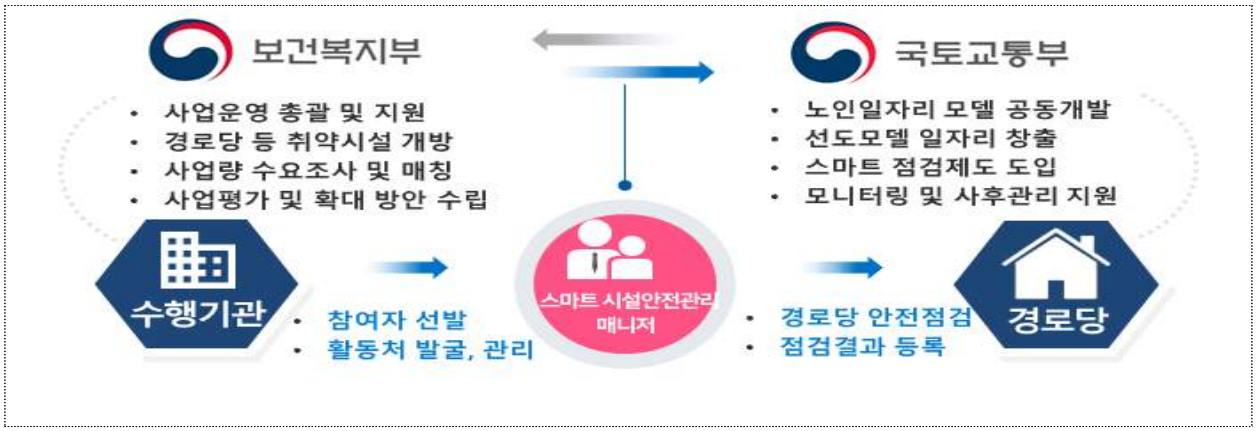

□ 세부 추진내용

○ **안점점검 체계 구축**

- **경로당 시설점검 체크 리스트 마련**(복지부) 및 점검내용을 반영하여 **스마트 점검 웹 시스템 개발**(국토부)

○ **사업모델 개발**

- (**사회서비스형**) **스마트 점검제도 도입** 및 활용하여 **경로당 안전점검** 시행 및 **사업관리**, 사후관리 등 추진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양성 교육, 스마트 점검제도 모니터링** 등 **직무 수행**으로 **선도모델 신규도입**

붙임5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토부)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 제27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사업내용**) 에너지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비용 지원

○ (**대상모집**)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별도 모집공고** (4월 中)

○ (**사업규모**) **총 1910억** ('23년 기준, 국고보조금 기준)

□ 지원자격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중인 기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 지원대상

○ '공공건축물'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아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사용승인일 2013년 1월 1일 이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에 따른 파출소 등

□ 지원내용

○ (**지원항목**) **에너지공사 항목**(필수항목 2개 이상 적용),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 **그린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공사비 지원**